

#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33,971,568	22,019,147
일반회계	660,828,899	19,824,867
특별회계	73,142,669	2,194,280
공기업특별회계	33,926,413	1,017,79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992,441	599,77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933,972	418,019
기타특별회계	39,216,256	1,176,4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789,219	173,6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695,020	80,85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19,103	9,57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54,695	28,641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4,145,000	124,3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2,000	6,660
도시개발특별회계	1,510,000	45,3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99,158	17,975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1,041,585	31,24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12,956,000	388,68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58,000	82,74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6,226,476	186,79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04,45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